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93
----------	-------

발의연월일 : 2026. 3. 3.

발 의 자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황운하 · 임미애 · 최혁진
김준형 · 손 술 · 용혜인
이주희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운영체제는 공영제 · 민영제 · 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는 형태라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은 형태의 준공영제 도입으로 민간업체 적자 보전 및 수익 보장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20년 1,705억 원에서 2023년 8,915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 기준 전국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총 2조 2,811억 원에 달함.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나,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버스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업체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단기이윤을 노린 사모

펀드 진출이 늘고 있음. 이와 같은 폐해를 막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버스노선을 다시 시민의 품에 넘겨주기 위한 버스체계 개편은 불가피함.

이에 국토교통부와 시·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고, 적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면허는 5년 이하 한정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또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버스공영제 등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거쳐 차량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유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는 시·도지사 재량으로 정당한 보상을 거쳐 버스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를 “여객 운송 서비스의 공공성을 증진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로 한다.

제2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9. “버스 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통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영을 위임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을 “노선을”로 한다.

제2장의2(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의 특례

제27조의4(버스 공영제 등의 면허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버스 공영제 또는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이하 “버스 공영제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0조 또는 조례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시에는 사업기간을 5년 이하로 하여 한정면허하거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27조의5(면허 등 취소에 따른 버스공영제 등 실시) ①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인수절차 및 보상의 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7조의6(면허 등 반납에 따른 버스 공영제 등 실시) ① 시·도지사는 승객의 편익 증대 및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송사업자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반납받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의 차량 및 설비 등을 인수하여 버스 공영제 등의 실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인수절차 및 보상의 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를 “자동차대여사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그 외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정면허를 받거나 위 기간까지를 조건으로 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u>여객의 원활한 운송과</u>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여객 운송 서비스의 공공성을 증진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u><신설></u>	9. “버스 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통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u><신설></u>	10.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운영을 위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3.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임하여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
-----.

1. -----
-----노선을-----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버스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의 특례

제27조의4(버스 공영제 등의 면허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버스 공영제 또는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이하 “버스 공영제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0조 또는 조례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여객

<신 설>

<신 설>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시에는 사업기간을 5년 이하로 하여 한정면허하거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27조의5(면허 등 취소에 따른 버스공영제 등 실시) ①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버스 공영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인수절차 및 보상의 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7조의6(면허 등 반납에 따른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 부 장관, 시·도지사(터미널사업 · <u>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u> <u>으로</u>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u>버스 공영제 등 실시) ① 시·</u> <u>도지사는 승객의 편의 증대 및</u> <u>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u> <u>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협의</u> <u>하여 운송사업자의 면허·허가</u> <u>· 인가 또는 등록을 반납받고</u> <u>해당 사업에 대하여 버스 공영</u> <u>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의 차량 및 설비 등 을 인수하여 버스 공영제 등의 실시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인수절차 및 보상의 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 ----- --<u>자동차대여사업, 노선 여객</u> <u>자동차운송사업 및 그 외 대통</u> <u>령령으로</u>----- ----- ----- -----
---	--

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제8호·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1. (생략) ② ~ ④ (생략)	----- ----- ----- ----- ----- -----. ----- ----- -----. 1.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